공 개

의안번호	제 149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5. 20. (제10차)

의결사항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5. 20.

1. 의결주문

□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SOCIETE GENERALE S.A** 등 **24인**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조사기간 : 2026.3.6. ~ 2026.4.1.)한 결과 확인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SOCIETE GENERALE S.A**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J.P. Morgan Securities PLC**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3,750만원) : **리딩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8,250만원)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4,500만원)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2,430만원) : **이성용** [개인투자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6,000만원) :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 [외국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교보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3,000만원) : **디에스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750만원) : **비앤아이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1,500만원) : **유진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강동배**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930만원) : **강중구**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김정호**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박종환**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370만원) : **서미영**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손광휘**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손주희**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오남원**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180만원) : **이영철**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장두경** [개인투자자]
○ 과태료 부과(560만원) : **전재범** [개인투자자]

4. 참고사항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가. 관계법규 : <붙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제39호의4

나.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수사기관 참고사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라. 수사기관 정보사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별지 1)

SOCIETE GENERALE S.A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SOCIETE GENERALE S.A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SOCIETE GENERALE S.A**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29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France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SOCIETE GENERALE S.A는 **2022. 1. 21. 총 1일, 148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2. 1. 21.~2022. 9. 29.** 기간 중 **총 2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SOCIETE GENERALE S.A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 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1	인터파크 등 148개 종목	1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1	인터파크 등 2개 종목	1
2022-09-29	하나투어보통주	2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별지 2)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Level 1, 1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는 **2022. 6. 21.~2022. 11. 14.** 기간 중 **총 7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2)

Macquarie Capital Global Equities PTY Limited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6-21	삼성SDI보통주	1
2022-06-22	삼성SDI보통주	
2022-06-23	삼성SDI보통주	
2022-06-24	삼성SDI보통주	
2022-07-15	삼성전자보통주	2
2022-07-27	삼성전자보통주	3
2022-11-14	현대자동차보통주	4

(별지 3)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20 boulevard des Italiens, 75009 Paris, France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는 **2022. 2. 11.~2022. 9. 1.** 기간 중 **총 2일, 8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2. 2. 11.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3)

BNP Paribas Financial Markets SNC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2-11	동국제강보통주 등 59개 종목	1
2022-09-01	DL보통주 등 30개 종목	2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2-11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1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건으로 산정

(별지 4)

J.P. Morgan Securities PLC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J.P. Morgan Securities PLC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J.P. Morgan Securities PLC** [외국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25 Bank Street, Canary Wharf London, England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J.P. Morgan Securities PLC**는 **2021. 10. 29.~2021. 12. 28.** 기간 중 **총 3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1. 11. 10.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4)

J.P. Morgan Securities PLC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10-29	삼성중공업보통주	1
2021-11-10	SK케미칼보통주	
2021-12-28	GS건설보통주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11-10	SK케미칼보통주	1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별지 5)

교보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교보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교보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교보증권**은 **2022. 1. 26.~2023. 3. 31.** 기간 중 **총 3일, 1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5)

교보증권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6	SK하이닉스보통주 등 2개 종목	1
2023-03-30	GS건설보통주 등 7개 종목	2
2023-03-31	GS건설보통주 등 8개 종목	

(별지 6)

디에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에스자산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디에스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4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디에스자산운용㈜**는 **2022. 1. 27.~2022. 12. 29.** 기간 중 **총 2일, 19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6)

디에스자산운용㈜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1-27	삼성SDI보통주 등 6개 종목	1
2022-12-29	하이트진로보통주 등 14개 종목	2

(별지 7)

리딩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리딩자산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리딩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리딩자산운용**은 **2022. 4. 14.~2026. 3. 5.** 기간 중 **총 20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6. 2. 24.~2026. 3. 5. 기간 중 총 7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7)

리딩자산운용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4-14	한국비엔씨	1
2022-04-15	한국비엔씨	
2022-04-19	한국비엔씨	2
2022-04-21	한국비엔씨	3
2026-02-20	현대차증권보통주	4
2026-02-23	현대차증권보통주	5
2026-02-24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5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6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7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3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4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5	현대차증권보통주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6-02-24	현대차증권보통주	5
2026-02-25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6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2-27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3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4	현대차증권보통주	
2026-03-05	현대차증권보통주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별지 8)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8,25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5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21. 6. 14.~2023. 6. 7.** 기간 중 **총 12일, 30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2. 9. 8.~2022. 9. 14. 기간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8)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6-14	HMM	1
2021-06-22	HMM	2
2021-06-23	HMM	3
2021-06-24	카카오 등 2개 종목	4
2021-06-25	씨젠 등 3개 종목	5
2021-06-28	씨젠 등 3개 종목	6
2021-06-29	씨젠 등 3개 종목	
2021-06-30	씨젠 등 3개 종목	
2021-10-13	에코프로비엠 등 3개 종목	7
2022-07-22	포스코케미칼보통주 등 14개 종목	8
2022-11-14	포스코케미칼보통주 등 16개 종목	9
2023-06-07	포스코퓨처엠보통주 등 11개 종목	10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9-08	유니테스트	11
2022-09-13	유니테스트	
2022-09-14	유니테스트	

(별지 9)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504호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22. 4. 6.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9)

비앤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4-06	LG에너지솔루션보통주	1

(별지 10)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유진투자증권**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유진투자증권**은 **2021. 8. 25.~2021. 11. 5.** 기간 중 **총 48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0)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8-25	SK	1
2021-08-26	SK	
2021-08-27	SK	
2021-08-30	SK	
2021-08-31	SK	
2021-09-01	SK	
2021-09-02	SK	
2021-09-03	SK	
2021-09-06	SK	
2021-09-07	SK	
2021-09-08	SK	
2021-09-09	SK	
2021-09-10	SK	
2021-09-13	SK	
2021-09-14	SK	
2021-09-15	SK	
2021-09-16	SK	
2021-09-17	SK	
2021-09-23	SK	
2021-09-24	SK	
2021-09-27	SK	
2021-09-28	SK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9-29	SK	
2021-09-30	SK	
2021-10-01	SK	
2021-10-05	SK	
2021-10-06	SK	
2021-10-07	SK	
2021-10-08	SK	
2021-10-12	SK	
2021-10-13	SK	
2021-10-14	SK	
2021-10-15	SK	
2021-10-18	SK	
2021-10-19	SK	
2021-10-20	SK	
2021-10-21	SK	
2021-10-22	SK	
2021-10-25	SK	
2021-10-26	SK	
2021-10-27	SK	
2021-10-28	SK	
2021-10-29	SK	
2021-11-01	SK	
2021-11-02	SK	
2021-11-03	SK	
2021-11-04	SK	
2021-11-05	SK	

(별지 11)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1121호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은 **2022. 3. 31.~2025. 9. 29.** 기간 중 **총 6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5. 9. 29.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11)

주식회사 케이와이자산운용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3-31	한국비엔씨	1
2022-04-01	한국비엔씨	2
2022-04-04	한국비엔씨	3
2022-04-05	한국비엔씨	4
2022-04-06	한국비엔씨	5
2025-09-29	넥써쓰	6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9-29	넥써쓰	6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별지 12)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 [국내 금융투자업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24층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한국 에스지증권주식회사**는 **2024. 7. 2.~2025. 3. 31.** 기간 중 **총 2일, 60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5. 3. 31. 총 1일, 29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12)

한국에스지증권 주식회사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4-07-02	기아보통주 등 43개 종목	1
2025-03-31	오씨아이홀딩스보통주 등 29개 종목	2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3-31	오씨아이홀딩스보통주 등 29개 종목	2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중복

(별지 13)

강동배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강동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강동배** [개인투자자]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강동배**는 **2021. 8. 31.~2021. 10. 21.** 기간 중 **총 6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3)

강동배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8-31	동진쎄미켐	1
2021-09-01	동진쎄미켐	
2021-09-15	동진쎄미켐	2
2021-09-27	동진쎄미켐	
2021-10-20	동진쎄미켐	3
2021-10-21	동진쎄미켐	

(별지 14)

강중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강중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93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강중구**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강중구**는 **2022. 12. 6.~2022. 12. 13.** 기간 중 **총 6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4)

강중구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12-06	제넥신	1
2022-12-07	제넥신	
2022-12-08	제넥신	2
2022-12-09	제넥신	3
2022-12-12	제넥신	4
2022-12-13	제넥신	5

(별지 15)

김정호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김정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김정호**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김정호**는 **2021. 9. 6.~2022. 11. 4.** 기간 중 **총 3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5)

김정호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9-06	넥센타이어	1
2021-12-01	신풍제약	2
2022-11-04	삼성엔지니어링보통주	3

(별지 16)

박종환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박종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박종환**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박종환**은 **2021. 7. 26.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6)

박종환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7-26	에코프로	1

(별지 17)

서미영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서미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서미영**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서미영**은 **2023. 2. 2.~2023. 2. 23.** 기간 중 **총 2일, 2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7)

서미영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3-02-02	에프에스티	1
2023-02-23	메지온	2

(별지 18)

손광휘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손광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손광휘**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손광휘**는 **2022. 3. 3.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8)

손광휘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3-03	바이오니아	1

(별지 19)

손주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손주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손주희** [개인투자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손주희**는 **2022. 6. 3.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19)

손주희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6-03	대한전선보통주	1

(별지 20)

오남원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남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오남원**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오남원**은 **2022. 4. 8. 총 1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20)

오남원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4-08	서진시스템	1

(별지 21)

이성용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성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제180조의3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2,43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성용**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 **이성용**은 **2021. 11. 2.~2025. 9. 15.** 기간 중 **총 71일, 3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고,

- **2025. 4. 14.~2025. 9. 3.** 기간 중 **총 57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붙임 21)

이성용의 보고·공시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11-02	신풍제약	1
2021-11-03	신풍제약	
2021-11-04	신풍제약	2
2021-11-10	신풍제약	3
2022-03-14	안랩	4
2022-03-18	안랩	
2022-03-28	안랩	
2022-03-29	안랩	
2022-04-04	안랩	
2022-04-05	안랩	
2022-04-06	안랩	
2025-04-18	포스코DX보통주	5
2025-04-22	포스코DX보통주	
2025-04-24	포스코DX보통주	
2025-04-28	포스코DX보통주	
2025-04-30	포스코DX보통주	
2025-05-12	포스코DX보통주	
2025-05-14	포스코DX보통주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5-21	포스코DX보통주	6
2025-05-29	포스코DX보통주	7
2025-05-30	포스코DX보통주	
2025-06-02	포스코DX보통주	
2025-06-06	포스코DX보통주	
2025-06-09	포스코DX보통주	
2025-06-10	포스코DX보통주	
2025-06-13	포스코DX보통주	
2025-06-16	포스코DX보통주	
2025-06-17	포스코DX보통주	
2025-06-24	포스코DX보통주	8
2025-06-30	포스코DX보통주	9
2025-07-01	포스코DX보통주	
2025-07-02	포스코DX보통주	
2025-07-03	포스코DX보통주	
2025-07-04	포스코DX보통주	
2025-07-07	포스코DX보통주	
2025-07-08	포스코DX보통주	
2025-07-09	포스코DX보통주	
2025-07-10	포스코DX보통주	
2025-07-11	포스코DX보통주	
2025-07-17	포스코DX보통주	
2025-07-18	포스코DX보통주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7-21	포스코DX보통주	
2025-07-22	포스코DX보통주	
2025-07-23	포스코DX보통주	
2025-07-29	포스코DX보통주	
2025-07-30	포스코DX보통주	
2025-07-3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4	포스코DX보통주	
2025-08-05	포스코DX보통주	10
2025-08-06	포스코DX보통주	
2025-08-12	포스코DX보통주	
2025-08-13	포스코DX보통주	
2025-08-14	포스코DX보통주	
2025-08-18	포스코DX보통주	
2025-08-19	포스코DX보통주	
2025-08-20	포스코DX보통주	
2025-08-25	포스코DX보통주	
2025-08-26	포스코DX보통주	
2025-08-27	포스코DX보통주	
2025-08-28	포스코DX보통주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8-29	포스코DX보통주	
2025-09-01	포스코DX보통주	
2025-09-02	포스코DX보통주	
2025-09-03	포스코DX보통주	
2025-09-08	포스코DX보통주	11
2025-09-09	포스코DX보통주	
2025-09-10	포스코DX보통주	12
2025-09-11	포스코DX보통주	
2025-09-12	포스코DX보통주	13
2025-09-15	포스코DX보통주	

□ 공시의무 위반 내역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4-14	포스코DX보통주	5
2025-04-17	포스코DX보통주	
2025-04-21	포스코DX보통주	
2025-04-23	포스코DX보통주	
2025-04-25	포스코DX보통주	
2025-04-29	포스코DX보통주	
2025-05-09	포스코DX보통주	
2025-05-13	포스코DX보통주	
2025-05-15	포스코DX보통주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5-21	포스코DX보통주	6
2025-05-29	포스코DX보통주	7
2025-05-30	포스코DX보통주	
2025-06-02	포스코DX보통주	
2025-06-06	포스코DX보통주	
2025-06-09	포스코DX보통주	
2025-06-10	포스코DX보통주	
2025-06-13	포스코DX보통주	
2025-06-16	포스코DX보통주	
2025-06-17	포스코DX보통주	
2025-06-18	포스코DX보통주	
2025-06-24	포스코DX보통주	8
2025-06-30	포스코DX보통주	9
2025-07-01	포스코DX보통주	
2025-07-02	포스코DX보통주	
2025-07-03	포스코DX보통주	
2025-07-04	포스코DX보통주	
2025-07-07	포스코DX보통주	
2025-07-08	포스코DX보통주	
2025-07-09	포스코DX보통주	
2025-07-10	포스코DX보통주	
2025-07-11	포스코DX보통주	
2025-07-17	포스코DX보통주	

공시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5-07-18	포스코DX보통주	
2025-07-21	포스코DX보통주	
2025-07-22	포스코DX보통주	
2025-07-23	포스코DX보통주	
2025-07-29	포스코DX보통주	
2025-07-30	포스코DX보통주	
2025-07-3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1	포스코DX보통주	
2025-08-04	포스코DX보통주	
2025-08-05	포스코DX보통주	
2025-08-06	포스코DX보통주	
2025-08-12	포스코DX보통주	
2025-08-13	포스코DX보통주	
2025-08-14	포스코DX보통주	
2025-08-18	포스코DX보통주	
2025-08-19	포스코DX보통주	
2025-08-20	포스코DX보통주	
2025-08-25	포스코DX보통주	10
2025-08-26	포스코DX보통주	
2025-08-27	포스코DX보통주	
2025-08-28	포스코DX보통주	
2025-08-29	포스코DX보통주	
2025-09-01	포스코DX보통주	
2025-09-02	포스코DX보통주	
2025-09-03	포스코DX보통주	

* 음영 부분은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건으로 산정

(별지 22)

이영철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영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영철** [개인투자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이영철**은 **2021. 9. 1.~2021. 9. 3.** 기간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22)

이영철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9-01	대주전자재료	1
2021-09-02	대주전자재료	
2021-09-03	대주전자재료	

(별지 23)

장두경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장두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장두경** [개인투자자]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장두경**은 **2021. 7. 27.~2021. 8. 9.** 기간 중 **총 4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23)

장두경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1-07-2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
2021-07-2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021-08-0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
2021-08-0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

(별지 24)

전재범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재범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의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동법 시행령 제390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전재범** [개인투자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 조치이유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 **전재범**은 **2022. 3. 14.~2022. 3. 16.** 기간 중 **총 3일, 1개 종목**에 대해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붙임 24)

전재범의 보고의무 위반 내역

□ 보고의무 위반 내역

보고의무발생일	종목명	위반행위(회)
2022-03-14	안랩	1
2022-03-15	안랩	2
2022-03-16	안랩	3

<붙임>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⑥ 생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② 생략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량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2.>

※ <개정 전>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 10. 17.>

<별표 22> 과태료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츠. 법인인 자가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6,000
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법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2 및 제39호의4	3,000

□ 금융투자업 규정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후략. <개정 2016.6.28.>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7.>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대차잔고 <개정 2022. 11. 9.>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2.>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7.>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21.4.6.>

※ 법 제449조제1항제39호의2부터 제39호의5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동기 / 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경미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개정 2021.4.6.>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개정 2021.5.12.>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 제35호의8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 및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삭제 2021.4.6.>

나. 감경사유

(3) 보고・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공시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개정 2021.5.12.>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1. 삭 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개정 2017. 10. 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9. 1., 2017. 10. 19.>

<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0.>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3.12.20.>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2020.5.13.>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전문개정 2017.10.19]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2017.10.19>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017.10.19>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7.10.19>

(3) 삭　제 <2017.10.19>

(4) 삭　제 <2017.10.19>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2020.5.13.>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19>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5.13.>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8) 삭　제 <2017.10.19>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7.25>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개정 2017.10.19>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2017.10.19>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신설 2017.10.19>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10.19>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2017.10.19>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공매도특별조사단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632